

## 【 2 】 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제출일자 : 2006. 6. 7.

제출자 : 이종호의원외 2인

### 1. 개정이유

-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임.

### 2. 주요골자

-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.

## 양주시 조례 제 호

### 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”를 “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“지방자치법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”으로 한다

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

- ②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위원회의 설치) ①(생략)  <u>②의회는 위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를 둔다.</u></p>	<p><u>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—— 「<u>지방자치법</u>」 ——</p> <p>제2조(위원회의 설치) ①(현행과 같음)  <u>②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u></p>